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6.

발 의 자 : 태영호 · 윤한홍 · 정희용

이명수・권성동・홍준표

이태규 • 이철규 • 강기유

김용판 · 김미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9년 6월에 발표된 「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」 결과에 따르면, 장애인,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첫 번째로 꼽혔으나,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,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.

이와 같이 낮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버스정류장 등의 버스 관련 여객시설이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, 그 시설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,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

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3항·제5항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"을 "저상버스등의 도입과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운행을"을 "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	제14조(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·군수가 지방교통약자	③
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	
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	
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	
에는 <u>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</u>	<u>저상버스등</u>
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	의 도입과 저상버스등의 운행
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	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
계획을 반영하고, 이에 따라 저	<u>한</u>
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	⑤
원활한 <u>운행을</u> 위하여 필요한	<u>운행 및 교통약자</u>
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	의 접근성을 개선하기
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	
여야 한다.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